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관리계획(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고시

- 1. 2016.2.3.자 제1차 성동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원안자문)와 관련됩니다.
- 2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31호(2008.7.10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82호 (2011.7.7)로 변경결정 고시된「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」내 획지(SR-2-1)계획 변경 제안사항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고시코자합니다.

= 아래 =

□ 도시관리계획(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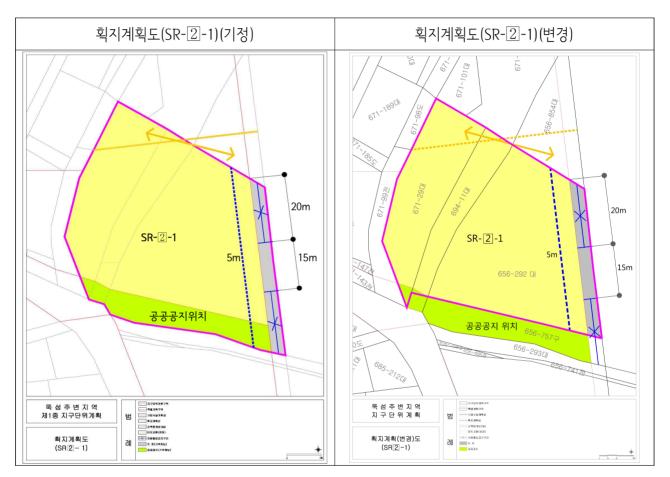
1)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도면	가구	면적	획지				ш¬
번호	번호	(m²)		위 치(성수1가동)		면적(m²)	- 비고
SR-2	SR-2	24,928	기정	2-1	656-292, 671-29, 694-3, 694-11, 656-757	3,318	· 공공공지/도로 조성후 기부채납 (면적 약356㎡이상/약206㎡이상)
			변경	2-1	656-292, 671-29, 694-11	2,853	 합 계:약 184㎡이상 · 공공공지 기부채납:약 8㎡이상 · 도로 조성후 기부채납:약 176㎡이상

주)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) 획지 및 공동개발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· 획지면적의 변경 : 3,318㎡ → 2,853㎡ 감) 465㎡(14.0%)	· 재정비중인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(안)의 내용(공공공지 위치 지정 폐지하고 도로 결정 예정)을 반영하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656-757, 694-3번지를 획지에서 제척하고, 차량출입구를 왕십리로에서 이면도로로 변경



3)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4. 고시방법 : 시보게재

5. 고시일자 : 2016. 3.10.(목) 예정

6. 행정사항

- 시보게재의뢰 : 서울특별시(시민소통담당관)

- 변경결정통보 : 서울특별시(도시관리과), 성동구(건축과, 토지관리과, 성수1가2동장),

주민제안자

붙임: ① 고시문(안) 1부.

② 지형도면 1부. 끝.

